

부산광역시체육회
가입 · 탈퇴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가입·탈퇴 규정

제정 2022.02.16.

전부개정 2023.12.28.

전부개정 2026.09.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조직),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및 제10조의2(회원단체의 강등·제명)에 따라 회원단체의 가입, 탈퇴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이란 체육회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란 회원단체가 회원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3. “등급”이란 정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을 말한다.
4. “승격”이란 준회원 단체가 정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5. “강등”이란 정회원단체가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준회원단체가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6. “제명”이란 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7.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이란 가입 및 등급 심의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 회원구·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가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8.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국제경기연맹(IF)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인정하는 아시아경기연맹(AF)에 가입한 단체일 것. 다만, 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최초 등급은 인정단체가 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경우 인정단체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해당 대회 개최 직전연도부터 준회원단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입이 승인된 경우 준회원 자격기간은 해당 대회 개최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며, 단체 등급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인정단체로 자동 변경된다.
- ④ 등급이 확정된 회원종목단체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제4조(가입 심의절차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경기연맹 또는 아시아경기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종목단체는 제14호의 자료를 제외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종목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의 정관(규약) 및 모든 규정
5. 회원가입 신청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6.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7.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동호인 및 팀(학교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록 현황

8. 구·군 및 읍·면·동종목단체 현황

9. 연맹체 현황

10. 종목단체의 대회 주최 실적 및 결과보고서

11. 국제대회 참가·입상 실적

12.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3. 전년도 예·결산서 및 해당연도 예산서

14. 종목단체의 국제경기연맹(IF) 및 아시아경기연맹(AF) 가입 확인 증빙 자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다음해 3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파견 및 훈련을 위한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가입요건,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④ 체육회는 가입 심의대상이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회원종목단체 가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체육회는 종목단체가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입 신청 시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조작이 있거나 필수 제출 자료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⑥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가입 승인 후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해당 가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가입·등급심의위원회가 종목단체의 가입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종목단체의 체육회 회원자격은 이사회 최종 의결 시까지 정지된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종목단체는, 해당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3년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등급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등급에 관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는

예외로 하며, 강등 또는 제명에 해당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심의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와 회원구·군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회원종목단체 요구: 회원구·군체육회에 가입한 구·군종목단체 가입 현황,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한 대회 현황 등
2. 회원구·군체육회 요구: 구·군종목단체 가입 및 등급 현황, 구·군종목단체가 주최한 대회 개최 현황
3.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건

③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등급 심의 시 제출한 자료에 허위 또는 조작이 있거나 필수 제출 자료를 누락한 경우, 가입·등급심의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승격) ①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는 해당 등급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준회원단체로 최초 가입한 단체가 인정단체로 등급이 자동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준회원 가입 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정단체가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대회 개최 직전연도부터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승격을 위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가입 요건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구·군체육회에 가입된 구·군종목단체 수와 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 8개 이상(5개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회원구·군체육회 준회원 등급 이상). 다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경우에는 인정단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승격 대상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 11개 이상(전체가 준회원 등급 이상). 다만 올림픽대회 종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하계올림픽대회 종목일 경우: 6개 이상(전체가 준회원 등급 이상)

나. 동계올림픽대회 종목일 경우: 4개 이상(전체가 준회원 등급 이상)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의3에 따른 직전 평가 결과가 최저등급인 경우
2. 회원종목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3. 관리단체 해제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승격을 희망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반드시 포함)
3.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각종 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사무처운영 규정 등 포함)
4. 구·군별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동호인 및 팀(학교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록 현황
5. 구·군 및 읍·면·동종목단체 현황
6. 연맹체 현황
7. 회원종목단체의 대회 주최 실적 및 결과보고서
8. 국제 대회 참가·입상 실적

⑤ 준회원단체 또는 정회원단체로의 승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다음해 3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파견 및 훈련을 위한 경우 등 승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승격요건,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승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준회원단체로의 승격: 이사회의 의결
2. 정회원단체로의 승격: 총회 의결

⑦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승격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승격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허위 또는 조작이 있거나 필수 제출자료를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출한 자료의 허위 또는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등급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승격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⑧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승격 승인 후 제7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당 승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가입·등급심의위원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승격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최종 의결 시 까지 승격 전 등급으로 유지된다.

⑩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승격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강등 및 제명) ① 체육회는 회원단체에 대하여 정관 제10조의2에 따라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강등할 수 있다.

1. 회원단체의 가입요건 또는 등급별 승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회원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5. 부산광역시 등 외부 감사와 체육회의 감사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최저등급인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강등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제명할 수 있다.

1. 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단체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안이 중대하여 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정단체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준회원으로 승격하지 못한 경우

⑤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에 앞서 해당 회원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지정한 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강등 또는 제명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강등 또는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0조의2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1.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2. 강등 또는 제명 시 문제점
3. 개선 가능성
4. 제2항제5호에 따른 처분 조치 이행 가능여부

⑦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해당 종목은 제명일 또는 탈퇴일로부터 3년간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입·등급심의위원회가 가입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탈퇴) ① 회원단체가 정관 제10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탈퇴한다.

②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가입·등급심의위원회) ① 체육회는 가입, 승격, 강등, 제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가입·등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회원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승격,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되, 체육회 사무처장과 생활체육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원구·군체육회의 가입과 등급)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

라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구·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단체 소개서(지역소개, 조직현황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허가증
6. 법인 등기부등본
7.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8. 법인설립 총회 회의록

② 회원구·군체육회는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본다.

③ 회원구·군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제외한다.

제11조(회원구군체육회 규정의 적용) 회원구·군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구·군종목단체에 한정하여 가입·탈퇴규정의 가입요건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강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강등을 유예한다.

② 이 규정 제7조제3항의 평가 결과의 반영은 개정안 시행일 연도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09.1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가입을 신청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승격 심의를 받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기존 인정단체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이 경

우 기존 인정단체의 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이 규정 시행 이후 가입하는 회원단체의 기간은 가입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④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명되거나 탈퇴한 단체부터 적용한다.

[illegible]

접수일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구·단체육회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단체명		연락처	
	주소			
	성명(한자)		생년월일	
	사무처 주소			
설립 연월일(총회일)				
설립목적				
회원현황	종목 단체	총 개 (정회원 0개, 준회원 0개, 인정단체 0개)	읍·면·동	개
단체현황	임원 구성	총 명 (회장 1명, 부회장 명, 이사 명, 감사 명)	사무처 직원	총 명 (정규직 명, 계약직 명)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관 및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 거부, 가입 승인 철회 또는 그 밖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_____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붙임자료 1. 단체 소개서(지역소개, 조직현황 등)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3.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4. 관할 지방자치단체 법인 허가증 사본 5. 법인 등기부 등본 6.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7. 법인설립 총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illegible]